

제 167 호

행 정 명 령

**뉴욕의 공식 건강보험 시장인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 프로그램에서
철수한 보험사 금지법령**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 특히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의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재정 지원을 줄이는 미국 건강보험법(American Health Care Act)을 최근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미국 건강보험법(American Health Care Act)이 뉴욕 주민 270 만 명을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상태로 놓아두고 뉴욕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에서 47 억 달러를 삭감하며 메디케이드(Medicaid) 서비스 및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만들어진 기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주민 700 만 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1,950 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주 건강보험제도(New York State health care system)를 위협하는 뉴욕의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건강보험법(American Health Care Act)은 또한 일부 주에서는 기존 병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여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주요 성과를 과거로 되돌리며 기존 병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 장치를 제거하여 그 결과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고 그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잃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뉴욕이 개인의 보험료를 낮추어서 보험이 없는 뉴욕 주민의 수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주정부의 공식 건강보험 시장인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 프로그램을 설립했기 **때문에,**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 프로그램이 2013 년에 운영을 시작한 이후 뉴욕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10 퍼센트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5 퍼센트로 절반이나 낮아졌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의 수가 270 퍼센트 증가했기 **때문에,**

뉴욕주 인구의 18 퍼센트인 뉴욕 주민 360 만 명이 공인건강보험(Qualified Health Plans), 메디케이드(Medicaid), 필수보험(Essential Plan), 어린이 건강보험 플러스(Child Health Plus) 등을 포함하여 가구 소득 및 기타 자격 기준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연속체인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 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뉴욕 주민들이 건강보험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비용분담공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매년 연방정부 재정 지원에서 약 4 억 달러를 수령하기 위해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워싱턴 디씨의 선출직 의원들의 성명에 따른 미국 건강보험법(American Health Care Act)이 불필요하게 가격을 인상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강보험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했기 **때문에**,

개별 시장에서 보험 회사가 철수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에 빠뜨리면서 뉴욕 주민 수십만 명에게 심각하고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뉴욕 주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뉴욕주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헌법과 뉴욕주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I. 정의

- A. “해당 주정부 기관”은 (i) 주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 및 (ii)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을 제외하고 주지사가 회장, 최고 경영자, 이사회의 이사 다수를 임명하는 모든 공익 법인, 공공 기관, 이사회, 위원회 등을 의미합니다.
- B. “커미셔너”는 뉴욕주 보건부(Health of the State of New York) 커미셔너를 의미합니다.
- C. “부”는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of the State of New York)를 의미합니다.
- D. “보험사”는 (i) 보험법(Insurance Law) 제 32 조에 의하여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을 계약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험회사 및 그 보험 회사의 모든 계열사, (ii) 보험법(Insurance Law) 제 43 조에 의하여 조직된 법인, (iii) 또는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Law) 제 44 조에 의하여 공인된 건강 관리 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 E. “시장”은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 프로그램 내의 개별 시장(Individual Marketplace), 보건부 내에 위치한 공식 건강보험 시장(Official Health Plan Marketplace) 등을 의미합니다. 연방정부의 환자 보호 및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의하여, 개별 시장(Individual Marketplace)은 합리적인 가격의 적격 건강보험을 구입한 후 그러한 혜택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 및 가족 등에게 부여합니다.

II. 대중에게 공개가 가능한 보험사 목록

- A. 커미셔너는 시장의 보험사들에게 매년 9월 1일 이전에 또는 커미셔너가 특정한 대체 날짜 이전에, 시장에서 철수하고자 하는 각 보험사는 다음 보험 연도를 위해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시장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이로서 지시합니다.
- B. 그러한 통지에 따라, 커미셔너는 시장에서 철수 의사를 통보한, 대중에게 공개가 가능한 보험사 목록에 그 보험사를 포함시키기 위한 의사를 그 특정 보험사에게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가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커미셔너에게 제출하기 위해 커미셔너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의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 C.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대중에게 공개가 가능한 보험사 목록은 보건부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상기 섹션 II (B)에 의해 커미셔너는 이 보험사가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는 선의의 결정을 한 경우 커미셔너는 이 보험사를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D. 커미셔너는 보험자가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건부의 웹사이트에 커미셔너가 게시한 지 30 일 이내에 서면 증거를 커미셔너에게 제출하여 이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을 커미셔너의 목록에 포함된 보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개별 시장(Individual Marketplace)에 보험을 제공한다는 선의의 결정을 커미셔너가 내리는 경우 커미셔너는 그 보험사를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III. 해당 주정부 기관에 의한 계약 금지

해당 주정부 기관 모두는 상기 섹션 II에 의해 커미셔너의 목록에 포함된 모든 보험사와 어떠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도록 이로서 지시합니다.

IV. 다른 시장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여 못함

보건부는 상기 섹션 II에 의해 커미셔너의 목록에 포함된, 시장에서 철수한 모든 보험사들이 메디케이드(Medicaid), 어린이 건강보험 플러스(Child Health Plus), 필수보험(Essential Plan) 등을 포함한 시장에서 제공되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이로서 지시합니다.

V. 커미셔너의 재량

상기 섹션 III 및 IV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정부 기관 및 시장은 커미셔너의 목록에 있는 보험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해당 주정부 기관 및 시장의 책임자가 그러한 보험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필수적인 주정부 기능의 수행에 필요하다는 서면 결정을 한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계약이 주정부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한 서면 결정은 해당 주정부 기관 또는 시장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일자보다 10 일 이전에 주지사의 비서와 주지사의 법률고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7년 6월 9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해서 이 명령을
발령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